

의안번호	제 127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12. 14 . (제 59 호)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안 년 월 일	1996. 12. 10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년월일 : 1996. / 2. / 10.

제출자 : 보은군수

☐ 제안이유

- 농지법 시행으로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수정 및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지법 시행으로 폐지 및 삭제된 법령 조항을 농지법의 관련조항으로 수정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조정
- 위원의 임기 신설 : 3년
- 위원의 해임 규정 신설
- 수당 규정 신설
- 농지임차료의 하한 폐지 및 상한 조정

☐ 근거법령

- 농지법

☐ 내 용

-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사전예고 결과

- 임차료 상한 읍면별 심의 의견 : 따로붙임

☐ 기타 참고자료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 농지관리위원회
2. ○○면 농지관리위원회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을 당해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9.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10.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리장은 군수로 부터 법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2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 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5. 기타 읍.면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 각호의 해임사유 발생시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7조 제2항의 확인과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조례 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임차료의 상한) ①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별표2와 같으며 수확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당사자간에 임차료를 수확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료의 상한에서 임차료의 지급일로 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는 조례를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농지관리위원회정수

읍 면	계	읍.면장	농민대표회의 (행정리)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지도소.농협)	비 고
계	254	11	221	22	
보 은	33	1	30	2	
내 속 리	16	1	13	2	
외 속 리	14	1	11	2	
마 로	24	1	21	2	
탄 부	22	1	19	2	
삼 승	25	1	22	2	
수 한	24	1	21	2	
회 남	18	1	15	2	
회 북	28	1	25	2	
내 북	23	1	20	2	
산 외	27	1	24	2	

주 : 농지가 없는 리를 제외한 행정리수가 30을 초과하는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농지면적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의 인접한 행정리를 통합하여 1인 위원을 선출토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위 사람을 농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리를 대 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9 년 월 일

○○리장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첨부1)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주소지 거주기간							
	⑤최종학력	학교 (졸업 중퇴)						
	⑥주요경력							
영 농 현 황	⑦ 소유농지 (단위 : m ²)							
	계		전		답		과 수 원	
	⑧ 임차농지 (단위 : m ²)							
	계		전		답		과 수 원	
	⑨ 임대농지 (단위 : m ²)							
	계		전		답		과 수 원	
	⑩ 영농경력		1 9 . . . ~ 1 9 . . . (년)					
⑪ 주재배작물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축 기 간 : 19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00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표2)

농 지 임 차 료 상 한

(단위 : m²당 원)

작물별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 년 성 식 물					
읍면별		답	전	답	전	과 수	묘목	인삼	약초		
평 균		280	184	200	240	1,255	100	325			
보 은 읍		300	100		300	1,250	100	325			
내속리면		300	200					325			
외속리면		318	280					325			
마 로 면		303	150					325			
탄 부 면		350	180					325			
삼 승 면		250	173			1,260		325			
수 한 면		220	190	200	180			325			
회 남 면		293	211					325			
회 북 면		303	202					325			
내 북 면		210	172					325			
산 외 면		230	170					325			

(별표2)

농 지 임 차 료 상 한

읍면별 심의 의견

(단위 : m²당 원)

작물별 읍면별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 년 성 식 물					
	답	전	답	전	과 수	묘목	인삼	약초		
평 균	263	176	165	203	1,270	115	241	110		
보 은 읍	300	100		300	1,250	100	260			
내속리면	300	200					250			
외속리면	318	280					325			
마 로 면	303	150					267			
탄 부 면	350	180					280			
삼 승 면	250	173			1,260		245			
수 한 면	220	190	200	180			250			
회 남 면	110	120	130	130	1,300	130	140	110		
회 북 면	303	202					202			
내 북 면	210	172					250			
산 외 면	230	170					190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 3 節 農地管理委員會等 第46條(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①農地 및 그 賃貸借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區(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邑 또는 面에 각각 農地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管轄區域안에	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농지관리위원회등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농지관리위원회등

農地가 없는 市·區·邑 또는 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地域의 特性과 農地分布의 實態를 考察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 이상의 市·區·邑 또는 面에 하나의 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

第47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인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40人이하의 委員으로 구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考察하여 農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정수등) ①위원회의 委員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성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1. 관할 市·區·邑·面長 2. 관할 市長(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郡守가 委員會의 管轄區域인 市·區·邑 또는 面에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5人以上 30人이하의 者 3. 관할 市·區·邑 또는 面에 所在하는 農村指導所·農漁村振興公社 및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關聯機關 및 團體의 長이 추천하는 그 任職員중 각 1人 ③委員長은 관할 市·區·邑·面長	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농수산물통계사무소 출장소 2.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제49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第46條第2項의 경우에는 관할 農地의 면적이 많은 市·區·邑·面長이 委員長이 된다.

④委員長은 第4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이내의 小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議決은 이를 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⑤委員의 任期·選任·解任과 委員會의 組織·會議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농지개량조합, 그 지소 및 출장소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 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48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의 調査등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에 관한 諮問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의 上限에 관한 審議 4.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에 관한 확인 5. 기타 農地의 관리에 관하여 大統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8조	

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협약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49條(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第50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農地原簿의 작성비치) ①市·區·邑·面長은 農地의 所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原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	

②市·區·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를 작성·정리하거나 農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農地原簿에 기재할 사항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農地原簿화일(磁氣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第1項의 規定

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